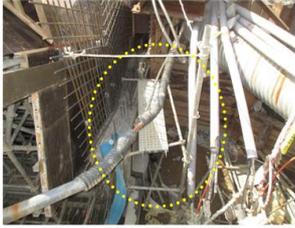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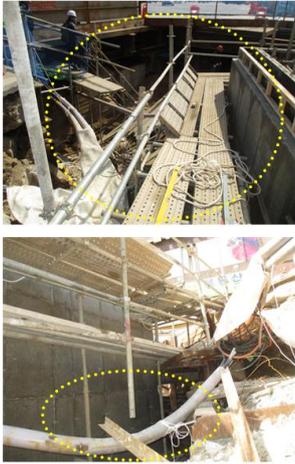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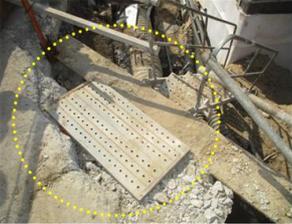
정기(기동점검) 점검 조치결과보고

(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(T/K))

- 점검일시 : 2018.03.22 (목)
- 조치결과
- ◆ 점검자 : 윤원섭, 박수엽

지적내용	점검사진	조치일자	조치사진
		조치내용	
<p>○ 가설비계 안전</p> <p>- 4번 환기구에 설치 된 작업비계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보완하기 바람</p> <p>① 발판으로 사용된 거꾸집 교체</p> <p>② 발판 고정상태 보완 및 밀실 설치</p> <p>③ 기둥 보완 및 전용 연결철물 사용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8(강관비계)</p>		2018.03.26	
		<p>1. 발판 교체 설치</p> <p>2. 발판 보수 조치함</p> <p>3. 난간대기둥 수정 및 전용철물로 교체 설치함</p>	
<p>○ 추락재해 예방</p> <p>- 4번 환기구 집수정 덕트 내부 작업용 발판은 이동하는 통로가 없고 발판설치가 밀실하지 않아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보완 후 사용바람.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8(강관비계)</p>		2018.03.26	
		<p>해당구간 작업 종료로 다른 구간 발판 설치시 통행로 설치 및 발판 밀실하게 설치함</p>	
<p>○ 전도재해 예방</p> <p>- 4번 환기구 작업구간 중 통로에 적치되어 있는 자재 및 공사부산물은 정리정돈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</p>		2018.03.26	
		<p>해당구간 자재정리정돈 실시함</p>	

<p>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</p> <p>- 정거장 종점부 배기덕트구간 굴착단부에 적치되어 있는 공사용 목재는 낙하의 위험이 없도록 이동 조치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</p>		<p>2018.03.26</p> <p>굴착단부 적치된 자재 이동 조치함</p>	
<p>○ 추락재해 예방</p> <p>- 2번 출입구 외부 벽체 작업을 위해 설치된 작업발판은 아래사항에 대하여 보완하기 바람.</p> <p>① 추락방지시설 보완 (안전난간등)</p> <p>② 발판 밀실 설치</p> <p>③ 기둥 지지상태 보완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(비계의 점검 및 보수)</p>		<p>2018.03.26</p> <p>해당구간 발판 해체 조치함</p>	
<p>○ 가설비계 안전</p> <p>- 2번 출입구 엘리베이터실 외부에 설치된 작업비계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보완하기 바람</p> <p>① 상부발판 안전난간 높이 보완</p> <p>② 발판 고정상태 보완 및 밀실 설치</p> <p>③ 기둥 지지상태 보완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동-8(강관비계)</p>		<p>2018.03.26</p> <p>되메우기로 인한 발판 및 기둥 해체됨</p>	

<p>○ 가설통로 안전</p> <p>- 2번 출입구 하부 작업 구간으로 이동하는 통로는 강제 가시설 모서리가 간섭되어 이동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니 안전시설 설치 후 관리 바람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</p>		<p>2018.03.26</p> <p>되메우기로 인한 발판 및 기둥 해체됨</p>	
<p>○ 가설통로 안전</p> <p>- 4번 출입구 작업계단 앞에 설치한 통로용 발판은 고정상태 및 주변 틈새까지 보완될 수 있도록 보완 설치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</p>		<p>2018.03.26</p> <p>통로용 발판 틈새 없도록 고정 조치함</p>	